

제24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
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8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2. 21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2. 21.

2. 제안이유

지방행정의 복잡·전문화로 지방의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 총수 등을 조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를 1,201명에서 1,204명으로 조정함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172명 → 1,172명 (변동없음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9명 → 32명 (증 3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(안 별표 3)
 - 총 계 : 1,201명 → 1,204명 (증 3)
 - 일반직 계 : 1,194명 → 1,197명 (증 3)
 - 6급 이하 계: 1,130명 → 1,133명 (증 3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6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책 지원 전문인력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음.
-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9명 → 32명으로 증원하여 총 정원은 1,201명 → 1,204명으로, 일반직은 1,194명 → 1,197명, 6급이하는 1,130명 → 1,133명으로 조정하는 것임.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」 정원책정기준에 적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서울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규모 현황 1부. 끝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2. 1. 13.] [대통령령 제32294호, 2021. 12. 31., 타법개정]

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“정책지원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2. 4. 19.] [대통령령 제32581호, 2022. 4. 19., 일부개정]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10.>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

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16.>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붙임 2

서울시 자치구의회 정책지원관 채용 규모 현황

연번	자치구	지역구	비례대표	총 의원수	정책지원관 채용규모		소 속 팀	비 고 팀 신설 (12구 신설)
					'22년*	'23년**		
1	종로구	9	2	11	2	3	의사팀	협의중
2	중구	8	1	9	2	2	정책지원실	신설
3	용산구	11	2	13	3	3	전문위원실	-
4	성동구	12	2	14	3	4	전문위원실	-
5	광진구	12	2	14	3	4	전문위원실	-
6	동대문구	17	2	19	4	5	전문위원실	신설 (인사관리팀)
7	중랑구	15	2	17	4	4	의사팀	-
8	성북구	19	3	22	5	6	정책지원팀	신설
9	강북구	12	2	14	3	4	정책지원팀	신설
10	도봉구	12	2	14	3	4	운영지원팀	신설
11	노원구	18	3	21	5	5	정책지원팀	신설
12	은평구	17	2	19	4	5	전문위원실	-
13	서대문구	13	2	15	3	4	전문위원실	-
14	마포구	17	2	19	4	5	정책지원팀	신설
15	양천구	16	2	18	4	5	의정팀	-
16	강서구	20	3	23	4	7	정책지원팀	신설
17	구로구	14	2	16	4	4	정책지원팀	신설
18	금천구	9	1	10	2	3	의사팀	-
19	영등포구	15	2	17	4	4	의정팀	-
20	동작구	15	2	17	4	4	정책지원팀	신설
21	관악구	19	3	22	5	6	행정지원팀 (=의정팀)	협의중
22	서초구	14	2	16	4	4	정책지원팀	신설
23	강남구	20	3	23	5	6	의정팀	-
24	송파구	23	3	26	6	7	전문위원실	신설 (운영지원팀)
25	강동구	16	2	18	4	5	의정팀	-

*'22년 채용규모 : 의원정수 1/4 이내(소수점 절사)

**'23년 채용규모 : 의원정수 1/2 이내(소수점 절사) 중 '22년 기 채용 인원 제외

※ 소속 : 정책지원팀·실(9), 전문위원실(7), 의정팀(5), 의사팀(3), 기타(1/운영지원팀)